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67

발의연월일: 2022. 7. 4.

발 의 자 : 김예지 • 배준영 • 정우택

박주민 · 강선우 · 박성민

이양수 · 임병헌 · 이태규

유정주 • 권은희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스포츠 관람 및 참여 욕구가 커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 비해 스포츠 경기 예매 및 관람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시 장애인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여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장에 관한 사항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 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임) ①・② (생 략)	임) ①・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
	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
	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u>다.</u>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생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2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u> <신 설></u>	9.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장애
	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
	다) 보장에 관한 사항
<u>9.</u> (생략)	<u>10.</u> (현행 제9호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18조의3(장애인의 스포츠관람

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